

##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6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가 설립·운영하는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용인시 공사·공단 사장 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 또는 이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용인시 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장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사장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용인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 시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제3호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당해 공사의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시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당해공사의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을 요구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사장추천위원회의 존속)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로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

제5조(위원장 임무)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장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회의) ① 사장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 ② 사장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사장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사장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시의 당해 공기업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장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사장후보자의 추천) ①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보자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추천된 사장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 사장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사장후보자의 모집방법) ①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공개모

집으로 하되, 그 모집방법에 대하여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사장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협조) ①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당해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자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